

대구예술대학교 교원임용규정

(개정 2009.10.28. 법인이사회)
(개정 2010.02.19. 법인이사회)
(개정 2010.03.31. 법인이사회)
(개정 2010.08.13. 법인이사회)
(개정 2012.06.21. 법인이사회)
(개정 2012.08.08. 법인이사회)
(개정 2019.06.20. 교무위원회/자구수정)
(개정 2019.12.10. 법인이사회)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리 법인이 유지·경영하는 대구예술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전임교원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구분)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교원은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및 강사로 분류한다.

(개정 2010.2.19.)(개정 2019.12.10.)

1.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하며,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개정 2010.2.19.)(개정 전임강사명칭폐지 2012.6.21.)(개정 2019.12.10.)

2. 비전임교원은 초빙교원, 겸임교원, 명예교수, 석좌교수, 객원교수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2.19)

3.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재임용·승진임용·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4. 강사라 함은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는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서 정한 교원을 말한다.(개정 2019.12.10.)

5. 이 규정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이하 “교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하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및 강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고,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2.19.)(개정 2019.12.10.)

제3조 (교원의 겸직금지) ① 교원은 우리 대학교 이외의 타기관에서 보수를 받는 직을 겸할 수 없다. 단, 비영리 기관일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개정 2009.10.28)

② 교원의 타학교 출강은 강사 교류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교원으로서 타기관의 촉탁·고문·임원·위원 등의 직을 수락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학술단체의 임원이 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4조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제5조 (보직) ① 교원에게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보직에 임해야 한다.

② 부총장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한다.

③ 전항 이외의 보직은 총장이 보하되, 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임용시기) ① 교원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를 임용일자로 한다.

② 교원의 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 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제7조 (임용절차와 임용권자) ① 교원의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심의 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개정 2010.2.19.)(개정 전임강사명칭폐지 2012.6.21.)

1. 교 수 : 6년
2. 부 교 수 : 5년
3. 조 교 수 : 3년

② 제1항 중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사항은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9.12.10.)

제8조 (해임 및 취소) 교원을 임용했을 경우라도 관할청으로부터 임용보고가 수리되지 않을 시는 당연히 그 임용이 취소된다.

제9조 (임용일자의 소급금지) 교원의 임용은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그 기소일자로 직위해제 하는 경우
2.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자가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휴직기간 만료일자로 직권면직 시키는 경우

제10조 (정년)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 2 장 임 용

제11조 (교원의 자격) 교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교육공무원법 제8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규정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라야 한다. 단, 특수한 학문분야의 교원을 임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0.2.19)

제12조 (신규임용의 절차 및 기준)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의 방법에 의하되 특별한 경우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2.19)

② 신규임용자의 직명은 학위 및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경력, 자질 등을 참작하여 정한다.

제13조 (연구실적년수) ① 연구에 종사한 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한 자는 2년까지,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한 자는 5년까지 100%로 계산한다.

나. 전임조교로서 연구에 종사한 자는 100%로 계산한다.

② 연구기관 및 부설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년수는 그 기관 및 연구의

상황을 재량하여 25%이상 100%까지 인정한다. 다만,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연구한 자에 비하여 유리하게 계산할 수 없다.

③ 실무기관에서 전문분야와 직접 관계되는 실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년수는 이를 연구년수의 일종으로 보아 70%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직무가 성질상 순전히 연구와 동일시 될 때에는 100%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14조 (교육경력년수) ① 대학 및 전문대학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각종학교의 전임교원으로 재직한 년수는 100%로 계산한다.

② 고등학교와 전항 이외의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경력년수는 그 기관 및 재직시의 담당 과목을 참작하여 최고 50%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15조 (년수의 통산) 연구실적년수와 교육경력년수는 서로 통산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실적년수를 교육경력년수로 통산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5년으로 한다. 연구경력과 실무경력이 동기간에 행하여 졌을 때에는 그 중 하나만을 택하여 계산한다.

제16조 (승진임용) ① 승진은 교육, 연구업적, 근무성적 및 학교발전의 기여도를 참작하여 현 직명에서 행한 실적을 심사하여 임용한다. 단, 부교수에서 교수로의 승진은 상당한 학문업적이 공인된 자에 한한다.(개정 2010.03.31)

② 승진은 3월 1일과 9월 1일에 실시한다.(개정 2012.6.21.)

제17조 (승진심사) ① 승진임용 후보자는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자료를 작성하고 순위를 정한다. 다만, 해외연구 기간 중인 교원은 승진심사에서 제외한다.

② 승진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 (승진소요년수) ① 교원의 승진에 소요되는 최저년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전임강사명칭폐지 2012.6.21.)

직명별	소요년수
조 교수 → 부교수	4 년
부 교수 → 교 수	5 년

② 승진 소요년수 산정에 있어 타대학의 동일직명이상의 재직년수를 합산 인정 할 수 있다. 단, 사립대학 교원은 관할청에 임명보고 된 자에 한한다.

③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 계산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은 제외한다.

④ 해외유학 또는 해외연수를 목적으로 한 휴직기간과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실적이 있는 자는 휴직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8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기준에 의한 직명간 교육경력의 차이년수에 해당하는 실제 교육경력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0.2.19)

제19조 (승진임용을 위한 교수업적 심사 및 평가) ① 승진임용 심사대상 교원은 제18조의 최저 소요년수에 달한 자로서 승진 소요 기간 내에 교수업적평가규정의 인정기준에 따른 교수업적이 있어야 하며, 승진임용예정일로부터 승진 소요년수만큼 역산하여 심사한다.(개정 2010.2.19)

제20조 (연구실적물 심사) ① 전조의 연구실적물의 심사는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하며, 타대학 교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0.2.19)(석·박사학위 논문은 심사를 생략한다)

② 연구실적물이 국내외의 저명한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 그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연구실적물 심사 평정점은 각 실적물이 평균 “우”이상 이어야 한다.

제21조 (삭제)(개정 2010.2.19)

제22조 (교원의 재임용)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교 총장이 재임용 한다.

(개정 2019.12.10.)

제22조의 2 (재임용을 위한 교수업적 심사 및 평가) ① 재임용심사대상교원은 교수업적 평가규정의 인정기준에 따른 교수업적이 있어야 한다.(개정 2010.2.19)

제22조의 3(재임용 여부의 통보) ①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 계약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10.2.19)

② 제1항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2.19)

③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은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2.19)

제23조 (적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교원 관련법규 및 학교법인세기학원 정관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9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재직중인 교원의 업적심사에 대한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당시 재직중인 교원의 업적평가는 201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개정 2012.6.21.)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임강사의 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조, 제7조, 제16조, 제18조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법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② 제2조, 제7조, 제16조, 제18조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 강사 근무경력은 이 법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제3조(제16조 경과조치) 교수승진심사일이 최초로 해당되는 자는 4월 1일, 10월 1일에 1회 실시하며 이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2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